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사주 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조합원의 조합원총회 소집 근거를 신설하고, 우리사주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 우리사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조합원의 조합원 총회소집 근거 신설(안 제12조제3항 신설)

- 현행법상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소집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조합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에 의한 총회소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만, 임원의 권한 침해 또는 개별 조합원의 권한 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정족수를 엄격히 설정

나. 수탁기관의 우리사주제도 지원업무 명확화 및 업무범위 확대

-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교육·자문에 대한 업무 범위를 구체화(안 제24조의2제4호 개정)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리사주 시장매입 등 수탁기관이 조합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에 ‘조합기금 조성 등 우리사주 취득·관리에 수반하는 조합업무 지원 및 대행’을 추가(안 제24조의2제5호 신설)

다. 지배관계회사 개념의 명확화(안 제9조제1호, 제2호 개정)

- 특정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함께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이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외에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조합원 자격의 빈번한 변동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분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명시

라. 우리사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 구체화

- 우리사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정해진 기간 내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의사표시가 있는 나머지 주식 수의 찬성·반대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적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개정)

- 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안 제28조제3항 신설)

마. 기본재산 사용 허용 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정비(안 제4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46조제4항제3호 개정)

- 기본재산 사용 허용 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법(제62조제2항제2호)에 맞게 자구 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1. ~ 2025. 1.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 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소유”를 각각 “직접적으로 소유”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③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의2제4호 중 “도입을 위한”을 “도입과 운영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합기금 조성 등 우리사주 취득 및 관리에 수반하는 조합업무 지
원 및 대행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아니하도록”을 각각 “아니
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지배관계회사) 법 제3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9조(지배관계회사) ----- ----- ----- ----- -----.
1.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u>소유</u> 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1. ----- ----- ----- <u>직접적으로 소유</u> -----
2.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u>소유</u> 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2. ----- ----- -- <u>직접적으로 소유</u> ----- --
제12조(총회의 개최) ①·② (생략)	제12조(총회의 개최)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 하면 <u>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u> 총회를 소집·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u>해당 조합원이</u>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④ ----- ----- 제2항 및 제3항--. ----- -----.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법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문</u>	4. ----- <u>도입과 운영 관련</u> -----
<u><신 설></u>	5. <u>조합기금 조성 등 우리사주 취득·관리에 수반하는 조합 업무 지원 및 대행</u>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① 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때 조합원의 제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사한다.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주 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뺀	2. ----- ----- ----- ----- -----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u>아니하도록</u> 행사할 것	----- ----- <u>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u> -----
②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조합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 으로 행사한다.	②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조합의 계정에 보유 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u>아니하도록</u> 행사할 것	2. ----- ----- ----- ----- ----- <u>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 대상) ① ~ ③ (생략)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 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④ ----- -----

금액이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 (이하 이 호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그 출연금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62조제2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80. 다만,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연금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나. ----- ----- ----- ----- -----

사용하는

2.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⑥ ~ ⑧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044) 202 - 7561